[별지 제10호서식]

취업성공수당 [] 지 급 [] 미지급 결정서

신청인	성명		
	주소		
결정내용	[] 지급 [] 미지급		
지급 금액 및 지급 회차	원(회차)	신청일	
미지급 사유			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

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

유의사항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취업성공수당의 반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담당자() 전화번호() 팩스번호(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(80g/㎡)]